



통보

개정

본 통보문은 10.6 조항에 따라 회람한다.

<p>1. 통보국가: <u>미국</u> 해당되는 경우, 관련 지방정부의 명칭(제 3.2 조 및 제 7.2 조):</p>
<p>2. 담당기관: 에너지효율재생에너지사무국(OEERE), 에너지부(DOE) 통보에 관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이 위와 다른 경우, 해당 기관의 이름 및 주소(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이메일 및 가능한 경우 웹사이트 주소 포함)를 명시해야 한다: 의견 제출: USA WTO TBT 질의처, 이메일: usatbtep@nist.gov</p>
<p>3. 근거 조항 제 2.9.2 조 [X], 제 2.10.1 조 [], 제 5.6.2 조 [], 제 5.7.1 조 [], 제 3.2 조 [], 제 7.2 조 [], 기타:</p>
<p>4. 해당 제품(해당되는 경우 HS 또는 CCCN, 이와 다른 경우 국가 관세 분류 번호. 해당되는 경우 ICS 번호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음): 식기세척기; - 식기세척기 (HS 코드: 84221); 환경 보호 (ICS 코드: 13.020); 에너지 효율. 에너지 절약 일반 (ICS 코드: 27.015); 식기세척기 (ICS 코드: 97.040.40)</p>
<p>5. 통보된 문서의 제목, 페이지 수 및 언어: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식기세척기에 대한 에너지 절약 기준 (19 페이지, 영어)</p>
<p>6. 내용: 규칙제정공고 - 개정된 에너지정책보존법("EPCA")은 식기세척기를 비롯한 다양한 소비자 제품 및 특정 상업용/산업용 장비에 대한 에너지 절약 기준을 규정한다. 본 규칙제정공고에서 미국 에너지부("DOE")는 연방관보 이번 호의 다른 곳에 고시된 직접 최종 규칙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식기세척기에 대한 개정된 에너지 절약 기준을 제안한다. DOE가 반대 의견을 접수하고 이러한 의견이 직접 최종 규칙 철회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DOE는 철회 공고를 고시하고 본 규칙안을 진행할 것이다.</p>
<p>7. 목적 및 근거(해당되는 경우 긴급한 문제의 성격 포함): 소비자 정보, 라벨링; 기만행위 방지 및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p>

8. 관련 문서:

89 연방관보(FR) 31096, 2024 년 4 월 24 일; [연방규정집\(CFR\) 제 10 편 제 430 부](#):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4-04-24/html/2024-08211.htm>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4-04-24/pdf/2024-08211.pdf>

본 규칙제정공고 및 [G/TBT/N/USA/945](#) 로 통보된 기존 조치들의 문서철 번호는 EERE-2019-BT-STD-0039 이다. Regulations.gov 의 문서 폴더는 <https://www.regulations.gov/docket/EERE-2019-BT-STD-0039/document> 에서 제공되며, 여기에서 관련 기본 문서, 보충 문서 및 수렴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문서들은 [Regulations.gov](#) 에서 문서철 번호를 검색해 액세스할 수 있다. WTO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는 [동부표준시](#) 기준으로 2024 년 8 월 12 일 [오후 4 시](#)까지 [USA TBT 질의처](#)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USA TBT 질의처에 접수된 WTO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 의견은 규제기관과 공유되며, 의견수렴기간 동안 접수된 경우 Regulations.gov 의 [문서철](#)에도 제출된다.

9. 채택 예정일: 추후 결정

시행 예정일: 추후 결정

10. 의견 마감일: 2024-08-12**11. 관련 텍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출처: 국가 질의처 [] 또는 다른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경우, 해당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이메일 및 웹사이트 주소:**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4/TBT/USA/24_02788_00_e.pdf